

2023년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7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87건(안전번호 제2023-21020호~2268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1020호~21051호(순번 1번~32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21052호~21099호(순번 33번~80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81번)는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1101호~21112호(순번 82번~93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를 통해 영상저작물(방송)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1,96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7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

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18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

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임. 총 60개 게시물임.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 및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의 목록이 다량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번 내지 32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 내지 8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 등에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100개 게시물임.

(순번 3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 해당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순번 33번~80번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

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3번~8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ㄱㄱㄱㄱㄱㄱ'에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ㄱㄱ ㄱㄱㄱㄱㄱㄱ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8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여러 건을 각각 ▼▼ ▼▼▼▼ 링크를 통해 게시하고 있음.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

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81번은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2번~9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방송물을 각 제공 중이며, 총 66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82번~93번은 각 게시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방송)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전송하

고 있는 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2번~9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94번~166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96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영화, 만화, 출판,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94번~166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4번~166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020호~21051호(순번 1번~3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052호~21099호(순번 33번~8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0호(순번 8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01호~21112호(순번 82번~9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113호~22688호(순번 94번~166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3.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